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5 선고 2021가단1038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주은, 박밀알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5.

주 문

1.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2020.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법원행정처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은 C에게 2012. 5. 23. 대출기간 48개월, 약정금리 연 34.8%, 연체금리 연 39%로 정하여 800만 원을 대출하였고, 2012. 7. 11. 대출기간 48개월, 약정금리 연 33.9%, 약정금리 연 39%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C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E은행은 2013. 12.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1. 9. E은행의 위임을 받아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8. ‘C은 원고에게 15,080,317원과 그중 10,370,826원에 대하여 2014.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87372호).

나. C과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고 F(이하 ‘F’이라 한다)은 1969. 11. 6. 피고와 혼인하여 딸인 G, 아들인 H, C을 두었다.

F은 1978. 12.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78. 12. 2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84. 9. 1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F은 2020. 3.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와 G, H, C이 있었는데, 상속지분은 피고가 3/9 지분이고, G, H, C이 각 2/9 지분이다.

피고와 G, H, C은 2020. 7. 1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과 피고가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한 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등 소극재산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2020. 7. 13.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는 상속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C과 피고 사이에 2020. 7. 13.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F은 2002. 10. 15.부터 2012. 12. 31.까지 자신 또는 자식들을 통해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792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2. 4. C의 기업은행에 대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원리금 28,194,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C은 F으로부터 적어도 86,114,000원(= 5,792만 원 + 28,194,000원)에 이르는 생전 증여를 받았고, 이는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액은 8,960만 원에 불과하고, 그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미 8,600만 원 이상을 특별수익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공시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위 공시가액의 3배를 시가로 산정하더라도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000만 원에 불과하고, C의 특별수익이 8,600만 원이 넘는 이상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공평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그의 몫 중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이러한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에 따라 수정된 상속분인 구체적 상속분이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는 범위도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때 특별수익의 존부와 범위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만으로 F이 2002. 10. 15.부터 2012. 12. 31.까지 C에게 합계 5,792만 원을 생전 증여하였거나 위 돈이 장차 상속인으로 될 C에게 돌아갈 그의 몫 중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만으로 F이 2014. 2. 4. C의 기업은행에 대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원리금 28,194,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생전 증여하였거나 위 돈이 장차 상속인으로 될 C에게 돌아갈 그의 몫 중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

목록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 5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표 블록조 스텔트지붕 단층주택 25.78㎡

3.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 114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 53.0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대지권 114900분의 2571 끝.

